

건축위원회 심의 주요결과

· []에는 해당하는 곳에 '○' 표시를 합니다.

운영기관	삼척시	심의일자	2024-04-25	
건축종별	[] 신축, [] 증축, [] 대수선, [V] 기타			
건축주	성명(법인명) 삼척시(보건소)	※ 여러 명인 경우 ○○○외 ○명으로 적습니다.		
대지현황	대지위치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남양동			
	지번 347-4	관련지번		
	대지면적 4730.7㎡	용도지역(지구, 구역) 가축사육제한구역, 도시지역, 준주거지역		
건축물현황	건축면적 1469.67㎡	건폐율 31.07%	층수 지하 : 층/ 지상 : 3 층	
	주용도 업무시설	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	건축물 동수 동	
	최고높이 16.7 m	용적률 75.9 %	연면적 합계 3590.79 ㎡	
구 분	주요 심의 내용			
(해체)분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구조설계계산서를 보면 보 같은 경우에 철판 보강을 한 사례가 보입니다. 이러한 경우, 구조해석에서 보를 어떠한 방법으로 모델링한 것인지 설명바랍니다. (기존 보와 철판 보강을 어떤 요소로 모델링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구조계산서를 보면 보에 대한 단면설계 결과는 보입니다만 모델링 과정은 잘 안보이는 것 같습니다. ○ 해체계획서의 시스템비계 구조검토에서 수평하중은 무엇이며, 수직하중의 5%에 대한 근거를 설명바랍니다. 그리고 하중조합에서 허용응력법을 사용하는 이유와 하중계수의 근거도 설명바랍니다. ○ 시스템비계의 모델링 방법(구조요소, 경계조건 등)에 대하여 설명바랍니다. ○ 옥상구조물 해체시 안전조치 구체화 필요(절단, 소음, 비산, 화재, 탈락, 안전 등) ○ 내외부 콘크리트 해체시의(소음, 진동)에 의한 인접 건물(상가, 공동주택) 피해 최소화 방안 구체화 제시(시간대별, 작업내용별) ○ 해체 작업시의 작업자 안전조치, 주변교통흐름, 먼지 비산 등의 조치 우선 ○ 해체 보고서 작업 내용 준수 ○ 해체대상 건축물조사(p.53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설계도면 유무가 다 없음으로 표기됨(확인바람) ○ 별첨된 철거도면이 해체계획서의 해체대상 건축물조사에 교체반영되어야함 (비내력벽 추가철거 등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해체시공사 및 보건안전공단은 해체계획서에 근거하여 공사 및 점검함 ○ 안전통로는 외부에서 게이트를 통해 진입하면서 작업공간까지 이어지는 구간을 안전통로라 하며, 작업자나 점검자가 안전하게 작업구역으로 진입하기 위한 통로를 말하는 것임(p.202) (출입문앞에만 설치하는 것이 아님) ○ 쌍줄비계의 벽이음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도면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답변서에 특기해준 해체 계획서 해당페이지에서 벽이음 위치 확인이 어렵습니다. 			

	<p>○ 지진하중에 의한 보강량 산정 근거를 추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보강전의 안전성 평가(또는 내진성능평가) 결과를 추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- 해석 모델링 이미지(보강포함)를 첨부 바랍니다. - 벽체 철판보강 보강량 산정근거를 추가 바랍니다. - 기초보강(파일기초)산정 근거와 상세도를 추가바랍니다. (강성보강을 적용한 기타 보강구역의 기초보강 필요여부검토) - (철거도면 S-102) 가새골조 보강위치에 "A"특기가 누락되었습니다. 시공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추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-	---

심의결과	<input type="checkbox"/> 원안 의결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조건부 의결 <input type="checkbox"/> 재검토 의결 <input type="checkbox"/> 부결
------	---

근거조문

건축위원회 심의기준	<p>9.3 심의결과는 다음 각 목 중 하나로 정하며, 조건부 및 재검토 의결은 이행 가능한 명확한 대안이나 재검토의 사항을 명확히 하여 위원장이 과반 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 정하도록 한다.</p> <p>가. 원안의결 : 상정 안건에 대하여 수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</p> <p>나. 조건부 의결 : 상정 안건에 별도의 내용을 부가하거나 제외하는 등의 일부 조건을 부여하여 건축사가 반영하도록 하는 의결</p> <p>다. 재검토 의결 : 상정 안건을 다시 검토 보완하여 추후 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토록 의결</p> <p>라. 부결 : 상정 안건이 건축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심의요건이 불충분하여 부결시키기로 의결. 단, 2.3 가목에서 라목까지 사유에 해당하여야 한다.</p> <p>9.6 위원회 심의 주요결과는 [별지 제2호]에 따라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며, 동 서식에 따라 건축행정 시스템에 등록하여 건축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.</p>
---------------	---

작성방법

1. 심의 결과는 “원안의결”, “조건부 의결”, “재검토 의결” 또는 “부결” 중 하나를 선택하여 표기
2. “주요 심의 의견” 란은 개인 식별(이름, 소속 등)에 관한 사항이 공개되지 않도록 기재(필요 시 심의위원은 표기를 甲, 乙, 丙으로 하는 등 임의로 기재 가능)